

제20차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 회의정보

조미영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I. 서언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 (CODEX 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s)는 CODEX 일반과제분과위원회 (General Subject CODEX Committee) 중의 하나로서 1965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분과위원회의 의장국은 프랑스이다.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 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절차를 논의하고 전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작업을 조정하는 분과로서 규정집에 기재된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CODEX 규격집의 목적 및 범위, CODEX 규격의 성격, 각국의 CODEX 규격의 수락 일반원칙 설정
- CODEX 분과위원회에 적용할 지침서 개발
- 개별 규격이나 부수규정을 그 국가의 경제 주체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제출한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설명서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 (Code of

Ethics for the International Trade in Food)의 설정
본고에서는 금번 20차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합의사항을 정리하여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의 논의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회의개요

제20차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는 2004. 5. 3~7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59개 회원국 및 26개 국제기구에서 총2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농업식품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od, Fisheries and Rural Affairs) 교육조사국 국장 (Director-General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주재아래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로는 규정 VIII.5 개정안, 식품안전성 위해분석 작업원칙(초안), 국제간 식품의 교역시 윤리규범,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 추적성 (traceability/product tracing)정의 검토,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참여원칙등을 검토하였으며 세부 논의내용 및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회의의제는 표 1. 참고)

표 1. 회의의제

의제 번호	의제	관련문서
1	의제 채택	CX/GP 04/20/1
2	집행이사회 및 타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CX/GP 04/20/2
3	규정 VIII.5 개정안	CX/GP 04/20/3
4	식품안전성 위해분석 작업원칙초안 - 정부의견 (3단계)1	CX/GP 04/20/4 CX/GP 04/20/4-Add.1
5	국제간 식품교역시 적용할 윤리규범초안 - 정부의견 (3단계)	CX/GP 04/20/5 CX/GP 04/20/5-Add.1
6	식품의 추적성(Traceability/Product Tracing) 정의 - 정부의견	CX/GP 04/20/6 CX/GP 04/20/6-Add.1
7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	CX/GP 04/20/7
8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 참여원칙” 검토	CX/GP 04/20/8
9	기타사업 및 향후작업 - 19차(임시)회의에서 제기된 사항 논의	
10	차기회의날짜 및 장소	
11	보고서 채택	

III. 의제별 토의내용 및 결과

1. 집행이사회 및 타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제 2) (Matters referr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Other CODEX Committees)

동의제는 집행이사회 및 타분과위원회에서 일반원칙분과와 관련된 논의현황을 보고하는 의제이다.

가. 53차 집행이사회('04. 2.)

<CODEX/OIE 협력>

동사안은 식품안전과 동물보건분야의 국제기준규격을 설정하는 OIE와 CODEX간에 작업공백과 중복된 영역을 확인하고 『동물생산시 미생물 및 화학적 위험에 대한 국제규격설정임무』를 가진 "Animal Production Food Safety 작업반(2002년)"이 구성됨에 따라 양기구의 협력관계 필요성이 부각되어 논의된 사항이다. FAO와 OIE 및 WHO와 OIE간 협력협정은 있지만 CODEX와 OIE간의 협력협정이 없어 양기구의 관계를 자문을 받기로 하였고 CCGP에서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에서 고려하기로 한 사항이다.

53차 집행이사회에서 말레이시아 대표는 FAO 및 WHO에게 OIE/CODEX 관계를 토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이사회에서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EC는 CODEX와 OIE 협력에 있어 투명한 절차 확보를 요구하였다.

CODEX 의장은 OIE/FAO 및 OIE/WHO 협정 개정안을 비준중임을 알리며 '식품안전 및 동물

생산 관련 OIE 작업반' 작업등 CODEX 및 OIE 협력정보, '비임상용 항균제 및 미생물내성제제에 대한 FAO/OIE/WHO 웍샵' 결과 CODEX/OIE 작업반 설립제안이 있었다는 정보를 알렸다. CODEX/OIE 협력사항은 의제 7에서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과학적 자문 제공>

CODEX는 FAO/WHO 과학적자문을 받아 위해 관리결정을 해오고 있으며 WHO 대표는 FAO를 대신하여 '과학적 자문제공에 관한 FAO/WHO 웍샵(2004. 1. 27~29)' 결과 제기된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며 'FAO/WHO 전략회의(Planning Meeting, 2004. 4. 29~30)'에서 지속적으로 FAO와 WHO에서 과학적 자문제공 절차 및 관리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고 FAO/WHO 사무총장 및 이사회에 권고사항을 제출하기 전 정부간회의를 개최예정임을 알렸다.

나. 식품의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분과 (CCFICS) 회의결과

CCFICS 회의에서 추적성(Traceability/Product Tracing)관련 원칙초안이 검토중임을 알렸다.

다. 분석및시료채취분과(CCMAS) 회의결과

CCMAS 회의에서 논의된 단일실험실검증분석 방법(Single Laboratory Validated Method of Analysis)에 대해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대표의견대로 동내용중 'OECD GLP 원칙'을 삭제하였고 CODEX 사무국은 동사안이 CODEX 체계에서 분석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안대로 상정지지하여 동개정안을 승인하

였다. 동시에 CCMAS에서 상정한 분석용어를 승인하였고 규정집에 포함키로 결정하였다.

라. 식품위생(CCFH) 회의결과

CODEX 사무국은 CCFH에서 '미생물 위해관리실행 원칙 및 지침 초안' 논의시 합의한 FSO(Food Safety Objective), PO(Performance Objective), PC(Performance Criterion)를 동분과에 상정하였고 규정집에 포함될 예정임을 알렸다. 미국(CCFH의장)은 동정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범적(prescriptive)이지 않은 용어라는 설명이 있었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에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등은 동등성과 관련하여 WTO 체계에서 동정의의 지위를 물었고 CODEX 위해분석작업과의 관계 및 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기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므로 식품안전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여 27차 총회(2004. 6.)에 동안을 임시로 상정하고 CCPR, CCFAC, CCRVDF, CCMH, CCFICS로 회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3차 CCGP(2006)에서 동분과의 자문을 토대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CCFAC) 회의결과

제36차 CCFAC에서 8단계로 상정한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에서 적용하기 위한 위해분석안' 및 '노출평가정책안'을 CODEX 위해분석작업원칙과의 일관성확보를 위해 동분과위원회로 회부한 사항으로 말레이시아는 위해분석안이 'General Decision of Commission'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other legitimate factor 내용 수정, 위해관리방안선정시 요소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도국

의 필요를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CFAC 정책안에 대하여 일본은 Maximum Limit을 Maximum level로 수정제안하여 반영되었다.

토의결과 CODEX 사무국은 회원국의 기술적 의견제시에 따라 동안을 승인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21차 CCGP에서 검토하고 필요시 CCFAC으로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2. 규정 VIII.5 [참관인] 개정안 (의제 3)

(Proposed Amendment to Rule VIII.5(Observers) of the Rules of Procedure)

□ 추진경과

동의제는 FAO/WHO 합동평가보고서 권고사항을 기초로 26차 총회('03. 6.)에서 법률자문관에게 규정개정을 의뢰하여 19차 CCGP('03. 11.)에서 논의한 바, CODEX와 모기구와의 관계를 따르고 집행이사회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민주적이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관인지위 승인관련 자문기능을 집행이사회에 위임방안에 합의하였다.

이후 FAO 및 WHO 법률자문관이 작성한 개정안을 FAO 법률위원회(CCLM;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nd Legal Matters) ('04. 3)로 검토 의뢰한 결과, 참관인승인권한이 WHO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있으므로 집행이사회에 자문기능위임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동회의로 회부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

브라질대표는 IGO 명칭에 International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여 규정 VIII.5에 International 추가하

기로 합의 하였다. 말레이시아대표는 국제비정부 기구의 참관인 자격은 집행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FAO 법률자문관은 총회에서 승인의견은 CODEX 위원회가 FAO/WHO의 하부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기구의 절차(FAO Basic Texts)와 일관성이 없다는 결정아래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 논의결과

규정 VII.5 및 규정 VII.6 개정안을 채택하여 총회로 상정하였다.

3. 식품안전성 위해분석작업원칙초안 [의제 4] (Proposed Draft Working Principles For Risk Analysis for Food Safety)

□ 추진경과

24차 CODEX 총회('01. 6.)에서 정부에서 적용할 위해분석 지침을 개발하자고 합의하여 17차 CCGP('02. 4.)에서 프랑스의 작업제안을 토대로 18차 CCGP('03. 4.)에서 논의한 결과 미국, 호주, 캐나다등은 CODEX 타분과위원회에서 이미 개발된 위해분석지침이 있는데 논의필요성이 있는지 문제제기하였고 EC는 WTO/SPS 협정5.1에 따라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위해평가기술을 고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지침설정을 제안, 일본등이 지지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

CODEX 사무국의 배경설명후 i) 정부를 위한 위해분석원칙 작업지속필요성 ii) 기초문서(Basic Text) iii) 서식(format)에 대한 회원국간 일반토의를 개시하였다.

FAO 대표는 현재 “식품안전성 위해분석 매뉴얼(Food Safety Risk Analysis - An Overview and Framework Manual)”이 개발중에 있음을 소개하며 동매뉴얼은 국가규제자 및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준으로 CODEX 기준 및 사례연구 등이 포함되어있고 2004년말경 발간예정으로 CODEX에서 위해분석관련 기준을 채택하면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C는 총회결정에 따라 원칙으로서 동분과에서 논의를 지속해야 하며 SPS 협정 5.1조에 따라 국가는 기술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위해평가기술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침문서를 작성하자는 입장이였다. 노르웨이는 CODEX는 WTO의 국제기준규격으로서 전문가협의회 결과는 지침으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사전예방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였다. 영국은 WTO 체제하에 FAO 매뉴얼을 국제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법적지위가 CODEX와 동일하지 않으며 CODEX 작업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다. 대부분의 대표단은 CODEX 위해분석 작업원칙에 근거한 현재 서식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브라질은 동원칙은 CODEX 원칙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 다른 형태로 논의하되 FAO/WHO 매뉴얼이 식품안전성 영역에서 정부에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위해분석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FAO 매뉴얼 발간후 재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미국등은 브라질의견에 동의하며 기초문서로서 FAO/WHO guidance를 사용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CODEX와 FAO/WHO 두기구에서 위해분석지침을 작성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두문서간 불일치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였다.

인도의 경우 사전예방이 24차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으므로 동논의에서 다루어지면 안되고

국가적용시 탄력적 적용을 위해 precaution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였다.

WTO 대표는 SPS 협정 5.1조에 따라 국제기구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위해평가지침을 설정해야 하며 IPPC 및 OIE등은 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CODEX에서 정부의 적용을 위한 식품안전영역의 위해분석지침을 작성하면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논의결과

회원국간 기초 작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3단계로 회부하고 정부의견수렴후 21차 CCGP(‘04. 11월) 임시회의시 캐나다-아르헨티나가 공동의장(cochair)을 맡아 작업반회의를 열어 동기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2차 CCGP(‘05. 4월)에서 4단계로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4. 국제간 식품교역시 윤리규범초안 [의제 5a] (Proposed Draft Code of Ethics for International Trade in Food)

□ 추진경과

동규범은 1979년 채택후 1985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지난 13차 CCGP회의(‘98. 9월)에서 규범의 개정작업 합의후 23차 총회(‘99. 6월)승인을 얻어 17차 CCGP회의(‘02. 4월)에서는 적용대상 및 서문만 논의하였으며 18차 회의(‘03. 4월)에서 조항별 논의를 하였으나 시간상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해 금번 회의에서 재논의하게 된 것이다

□ 주요 논의내용

CODEX 사무국의 배경설명후 4.5~9조를 먼저 논의하자는 제안에 하루동안 논의를 하였으며 자세한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4.4조>

관련규격(relevant standard) 목적에 대한 논의 결과 EC, 캐나다등은 국가규격을 설정하고 집행시 CODEX 규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taking into account])에 동의를 표명하였으나 말레이시아, 태국등은 조화되어야 한다는 입장([through harmonized with])등 의견이 서로 달랐다. 아르헨티나, WTO대표는 SPS 협정 및 TBT 협정에 따라 “based on CODEX texts” 제안아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taking into account](based on)두가지를 ◉처리하였다.

호주는 TBT 협정 규격정의에 비추어 “food standard”를 “food regulation”으로 수정제안하여 반영되었다.

<4.5조>

스페인은 SPS 협정 및 TBT 협정 인용문제에 대해 모든 CODEX 회원은 WTO 회원이 아니라면 지적과 브라질등은 동문구를 유지하자는 의견에 따라 WTO 회원에게만 WTO 협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where applicable” 추가하였다.

수입국은 개도국의 생산, 수입, 수출하는 식품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구는 개도국의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삭제하자는 아르헨티나 의견이 반영되었다.

<4.6조>

브라질 대표는 모든 국가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점에서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4.6조를 재구성하였다.

<5.1조>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무역되는 식품은 수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traded internationally)로 수정제안 반영되었다.

미국대표는 수입과 수출시 적용가능한 일반규정으로 “food standards and safety requirements of importing countries should be transparent and available to exporting countries” 제안하여 반영되었다.

<5.2조>

캐나다의 제안에 따라 “health hazard”를 “risk”로 수정하였고 인도대표는 국가법령에 맞지 않고 식품안전 및 품질이 확보되지 못한 식품을 수출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을 하며, 다만 식품이 CODEX 규격에 적합한 경우만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제안, 또한 이 규정은 안전성과 품질규정이 아니라 표시 관련 규정이므로 국가마다 다르고 수입국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만 수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등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처리되었다.

<5.3조>

아르헨티나대표는 조항 전체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고 충분한 보호수준이 회원국마다 다르다는 것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SPS 협정 및 TBT 협정과 일관되지 않다는 입장하에 삭제를 제안하였다(호주, 브라질, 미국, 태국지지).

EC, UK 대표는 식품교역이 발생가능한 모든 비윤리행위가 서술되어 있어 꼭 필요한 규정이라며 삭제를 반대하였다(덴마크, 노르웨이지지).

인도대표는 5.3f)와 관련하여 유통기한 만료기한이 가까운 제품의 수출을 막기 위해 잔존 유통기간 %를 제안하는등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전체를 ◉처리하였다.

<5.5조>

EC 대표는 영·유아용 식품(infant and young children) 관련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young children을 제안하였고 WTO 대표 및 사무국은 동규정이 “WHO Global Strategy on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5.6조>

인도대표는 GMO 유래성분을 포함한 식품 및 가공식품의 GMO 표시제안, 캐나다등은 동사항이 CCFL에서 논의중이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제시, 미국대표는 규범내용중에 타분과 논의사항은 검토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아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6.1조>

미국은 부적합결정등의 수입국 조치와 관련하여 수입시 또는 통관거부시 화물의 폐기, 불공정무역행위 정의, SPS 및 TBT 협정과 연관성에 대한 문제제기, 논의결과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on Rejections of Imported Food(CAC/GL 25-1997)의 제5조를 준용키로 결정하였다.

<6.2조>

인도대표는 위해가 나타난 식품은 재수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6.3조>

화물의 통관거부(rejection) 또는 억류(retention)조치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로 CAC/GL 25-1997을 준용키로 결정하였다

<7.1조>

수출국과 수입국 책임의 균형을 맞추고 수입국의 입법책임과 집행책임을 포함시키기 위해 캐나다 제안이 수용되었다.

<9조>

말리대표는 ‘human health’ 보다는 ‘public health’로 사용하자는 제안 수용, 동규범 적용식품을 판매용 식품에 한정하기보다는 국가로 수출되거나 유통되는 식품까지 포함키로 결정하였다.

<일반토의>

몇몇 대표단은 많은 실재적인 사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관계로 3단계로 회부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였다. 의장은 동규범 적용범위을 윤리(Ethics) 또는 무역(Trade)으로 해야 하는지 총회에 질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여러 회원국이 Code of Ethics 구성내용이 매우 복잡하며 trade와 ethics가 혼재되어있으며 특히 trade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였다.

동규범을 ethics에 초점을 맞추되 상업적 정책(commercial policy)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의견에 대해 인도는 오직 ethics만 고려하자는 입장에 스위스등은 동의하였다. FAO 대표는 "FAO High Panel on Ethics in Food and Agriculture"를 구성했으며 동규범에 대해 의견요청시 동패널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WHO 대표는 WHO에도 유사한 패널이 있음을 알렸다.

□ 논의결과

동규범을 윤리에 초점을 맞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총회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하고 3단계로 회부하여 차기 22차 정규회의('05. 4월)시 논의키로 하였다.

5. 식품의 정의 [의제 5b)] (Definition of Food)

□ 주요 논의내용

지난 18차('03. 4) 회의시 규범 제3조 정의 검토시 사무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금번 회의시 논의하게 된 것으로 사무국은 현재 국제적으로 식품의 정의가 없으며 국가법령사이에 실제적인 차이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몇몇 대표단은 식품의 정의는 별도 의제로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의를 제공할 것을 제안, 일본은 식품의 정의에 약용식품(Pharmaceutical product)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제시, IFGMA는 식품의 정의에서 축 임겸 삭제를 제안하였다.

□ 논의결과

차기 27차 총회('04. 6월) 작업승인을 전제로 22차 CCGP 회의('05. 4월)에서 논의키로 하였다.

6. 추적성 검토 [의제 6)](Consideration of Traceability/Product Tracing)

□ 추진경과

49차 집행이사회('01.9)는 수출입인증분과의 요청에 따라 CODEX 사무국에서 정리한 Traceability에 대한 내용을 일반 의제로 논의하였고 CCGP, CCFICS, CCFH, CCFL, CCFBT 등과 지역조정위원회에서도 필요한 분야를 논의하였다.

CCGP는 16차('01. 4)~18차('03. 4) 회의를 통해 추적성 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CODEX에서 사용할 추적성 정의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여 18차 회의에서 프랑스에서 전자작업반을 구성하여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금번 회의시 논의하게 된 것이다

□ 주요 논의내용

추적성 정의에 대하여 EC, 미국, 호주등은 명확하고 단순한 정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제시, 호주는 CCFICS에서 원칙을 개발중이므로 정의가 필요하며 추적성 적용을 위한 목적 또는 원칙을 나열하지 않고 간단히 개발하자는 입장이

였다. 한편 몇몇 대표단은 정의는 광범위해야 하며 관리도구의 개념을 적용하고 식품무역시 공정한 관행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물사료 및 식용동물도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도대표는 일차생산을 제외하는 유통성을 갖자는 입장이었다. 아르헨티나, 캐나다등은 정의를 제시하였고 작업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 capacity, method, system, management tool을 첫 시작점으로 하여 논의를 개시하였고 세부 내용은 프랑스 대표단을 의장으로 한 임시작업반(ad hoc drafting roup)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 ◇ 지침을 적용해야 할 대상자가 사람/기관일 수 있으므로 ability로 명기
- ◇ 동일한 경로에 대해 여러 단어(trace/track/identify)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to follow the movement of”로 합의
- ◇ 사료 및 식용동물을 포함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식품유통체계(food chain)상 사료나 식용동물을 경우에 따라 포함한다는 점, 또한 식품의 정의에는 사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개도국의 일차생산조건을 고려하여 “through specified stage(s) of”로 합의
- ◇ 추적성 운영범위를 간결하게 명기하기 위해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으로 합의
- ◇ 또한 production 용어에는 식용동물, 사료, 사료업자, 농약, 수의약품, 동식물원료등 추적성 적용시 관련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합의

작업반 논의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회의시 채택하였다.

“the ability to follow the movement of a food

through specified stage(s)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 논의결과

추적성 정의안을 27차 총회(2004. 6)로 상정하였다.

7.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의제 7)

(Guidelines o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추진경과

제24차 총회(‘01. 6월)에서 CODEX 기준규격 설정작업에 참여하는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지침설정합의에 따라 CODEX 사무국에서 지침을 작성하여 제17차 회의(‘02. 4월)에서 논의를 개시하였다. 동논의는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정관(Statute) 제1조 (b)항 및 Strategic framework Objective 3에 근거한 것이다.

18차 회의(‘03. 4월)에서 CODEX 사무국은 다음 세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하여 논의한 결과 2안은 삭제하고 3안은 현재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1안에 초점맞추어 사무국에서 재작성하여 금번회의시 논의하게 된 것이다.

- 1) 규격설정절차와 회원자격에 동일한 원칙을 가진 규격설정기구와 공동규격 또는 관련 기준 설정(예, OIE, CCMMMP)
- 2) CODEX 협력기구에서 설정한 규격을 공동규격(joint standard) 또는 기준으로 설정
- 3) CODEX 규격 또는 기준의 초기 기안단계에서 실재적인 협력 (예, UNECE, CCMAS)

□ 주요 논의내용

호주등의 CODEX 정관 및 전략체계 Objective 3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서술한 서언(preamble)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말레이시아는 공동규격(Joint standard) 설정은 CODEX 효율성을 막으며 한편 CODEX와 협력 기구간 회원자격 및 절차, 접근방식의 차이등이 개도국에게 어려움을 주며 투명성 및 포괄성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처음 기안단계는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초기 기안작업시 협력에도 반대를 표명하며 초기 기안단계는 CODEX 설정절차를 통해 CODEX 하부분과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표명하였다(인도, 멕시코 동의).

칠레대표는 규격설정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타 기구와의 협력절차 개발은 중요하며 유동성(fluidity)과 투명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별도 절차 유지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IE등은 식품유통체계에 있어 동물성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CODEX와 OIE 협력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장생산단계에서 인체건강을 논의하는 “OIE Working Group on Animal Production Food Safety” 활동을 강조하였다. FAO/OIE, WHO/OIE 협정은 있지만 CODEX와의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CODEX 회원국은 대부분 OIE 회원국이므로 지침개발 및 공식적인 관계협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뉴질랜드는 CODEX와 협력기구와의 협력은 공동이해영역에 있어 중복, 공백, 일관성이 없는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OIE의 CODEX 하부분과 위원회 작업에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기구간 규격을 상호참고(cross-referencing)하는 것은 일관성 증진면에서 유용한 방법임을 언급하였다.

OIV 및 IIR은 각각의 활동을 알리며 오랫동안

CODEX와 협력을 유지해왔음을 알리며 동작업을 지지표명하였다.

미국은 CODEX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IGO의 전문가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OIE 협력을 강조하며 규격개발 초기단계에서 협력을 제안하였고 CODEX 절차를 사용하여 채택하자는 입장을 제안하였다.

브라질은 IGO와의 협력은 지지하지만 공동규격설정을 제안한 절차는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비용과 규격설정과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동의).

동분과는 협력유형중 3a) 조항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미국, 캐나다등은 “초기단계(initial drafting)의 협력”은 이미 관행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가지침개발을 위한 기초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일랜드(EC대표)는 협력기구의 작업에 CODEX의 참관인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협력을 제안, 인도는 새로운 절차는 실재적인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논의결과

사무국은 “3c) 초기단계에 협력유형”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재기안하여 21차 임시회의(‘04. 11월)에서 검토키로 합의하였다.

8.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의 참여 원칙 검토 [의제 8]

(Review of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Works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추진경과

동의제는 제26차 총회('03. 6월)에서 FAO/WHO 합동평가보고서 권고사항을 기초로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 참여원칙” 개정요청에 따라 작업개시, 제19차 CCGP 회의('03. 11월) 결과, CODEX 사무국에서 FAO 및 WHO 법률자문관과 협력하에 규정Ⅷ 개정 결정과 국제비정부기구의 자격기준(eligibility)을 고려하여 본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

WHO 법률자문관의 다음 내용소개이후 회원국간 자유토론을 실시하였다. 동문서는 INGO 참관인지위승인 및 종료절차, INGO 자격기준에 초점을 두었음을 설명하며 두가지 문제점을 상의하였다.

- 1) 규정Ⅷ 개정안의 채택시기(27차 총회)와 INGO 승인절차 채택시기(28차 총회) 차이로 인한 경과기간(transitional period) 발생을 고려하여 규정Ⅷ 채택을 28차 총회('05. 6월)로 연기하거나 규정Ⅷ 시행시기를 원칙채택시점까지 연기할 것을 제안
- 2) FAO/WHO 합동평가권고에 따라 개정 기준을 현재 참관인지위를 가진 INGO에도 적용하고 동검토를 위한 시간계획의 제안 필요성 제시

많은 대표단은 사무국의 제안을 기초한 원칙 개정작업에 동의하고 특히 자격기준에 동의를 표명하며 기여도의 다양성과 광범위한 참여간에 균형유지가 필요하며 작업의 효율성과 유용한 자원의 우선순위 설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NGO에 적용하는 최고 기준은 CODEX 목적을 위한 기여도, 관련이해에 관한 투명성 및 공동의

견의 대표능력임을 합의하였다.

CI(국제소비자기구)는 상업 및 소비자단체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 49P는 INGO 선정위한 최고기준은 CODEX 작업추진능력을 보여주는 “track record”임을 언급하였다.

< INGO 다양한 구조 및 임무(mandatory) 평가기준>

몇몇 참관인은 숫자 또는 정량화한 기준은 INGO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의미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우려표명, 몇몇 회원국 및 참관인은 CODEX 회의참여도를 기여도의 지표 및 참관인 유지기준으로 사용할 때 CODEX 분과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전문영역의 INGO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회의 참석에 따른 INGO 비용증가도 검토되어야 하며 이점에서 기여도 및 협력면에서 서면의견제출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INGO 구조 및 활동범위가 국제적이여야 한다는 제안>

캐나다는 INGO는 회원국이 있어야 하며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최소 회원국수를 제시한 의견에 지지하였다. EC는 INGO는 최소 두개 지역(geographical location)의 회원국 및/또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하였다.

CI, 일부대표단 및 참관인은 집행이사회와 FAO 및 WHO 사무총장은 지역기준을 적용할 때 CODEX와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INGO가 제외되지 않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벨기에대표는 지역기준의 엄격한 기준은 식품별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한 지역의 회원국이 많은 INGO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ALA 지지).

미국은 연맹성격의 “Umbrella INGO”는 조심스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CODEX 회의에 참석하는 참관인 지위는 umbrella 기구의 특성상 그 기구의 회원국이 승인되고 큰 기구의 입장대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였다.

IFU 참관인은 umbrella 기구는 대표영역의 일반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회원국 의견의 조정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WHO 법률자문관이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27차 총회에서 규정Ⅷ을 채택하면 적용시점을 원칙채택시점 이후로 연기할 것을 지지하였다.

□ 논의결과

사무국은 FAO 및 WHO 법률자문관과 협력하여 동원칙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고 21차 CCGP회의(‘04. 11월)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규정 Ⅷ이 27차 총회(‘04. 6월)에서 채택되면 적용시점을 원칙개정안 채택 이후로 연기할 것을 27차 총회에 권고키로 하였다.

9.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 – 19차 회의 회부사항 [의제 9]

(Other Business and Future Work,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Arising from the 19th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mmittee)

가. 지역회원 및 지역조정관의 역할

(Clarification of the respective roles of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elected on a geographic basis and of Coordinators)

□ 추진경과

26차 총회(‘03. 6월)에서 지역조정관을 집행이 사회의 참관인자격에서 임원자격으로 조정합의한 바 있다.

□ 주요 논의내용

CODEX 사무국은 27차 총회(‘04. 6월) 승인아래 정부에게 공람하여 조정관과 지역회원간의 역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조정위원회에 논의한 내용을 28차 총회(‘05. 6월)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칠레는 다수 국가로 구성된 지역에서는 다수 대표의 선정 필요성 언급, 미국은 조정관도 원칙적으로 지역대표이므로 두명의 자문관과 동행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다.

□ 논의결과

동건에 대해 정부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8차 총회(‘05. 6월)에서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나. 집행이사회와 조정관 및 회원의 임기 명확화

(Clarification of the duration of the term of the Coordinators and other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 추진경과

19차 회의(‘03. 11월)에서 사무국은 규정Ⅲ.4(b)에 따라 정규 총회를 기준으로 임명당시 임기가 결정되므로 현재 26차 총회(2003. 6.)에 임명된 조정관의 경우 그 임기가 28차 총회(2005. 6.)까지 임을 확인한 바 있다.

□ 주요 논의내용

CODEX 사무국은 지역조정관과 지역회원이 동일국에서 임명될 수 없음을 언급하였고, 미국은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2~4년인 반면 조정관 및 지역회원 임기는 3~6년까지여서 집행이사회 전임원에 대한 임기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다.

□ 논의결과

CODEX 사무국은 FAO 및 WHO, 법률자문관과 함께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고 모기구의 관행을 고려하여 21차 회의시('04. 11)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다. CODEX 규격의 수락 및 통보절차 적절성

(Relevance of the current Acceptance and Notification Procedures for CODEX Standard)

□ 추진경과

CODEX 사무국은 12차 CCGP회의('96. 11월)부터 논의된 사항이라는 배경을 소개하면서 수락 및 통보절차가 실제적으로 CODEX 위원회와 회원국에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수년 전 검토되었으나 삭제 또는 개정여부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

아르헨티나는 WTO 체제로 무역환경이 변화되었음을 고려하여 재검토요청, EC, 캐나다등은 현재까지 회원국의 수락정보가 없었으므로 삭제 제안, WTO대표는 CODEX 회원국은 WTO 의무와 관계없이 CODEX 규격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CODEX 회원국이며 동시에 WTO 회원국인 국가가 두 국제기구에 통보할 때 정부의 부담을 고려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 논의결과

제21차 CCGP회의(2004. 11)에서 사무국 작성 문서를 토대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규정집 재구성

(Possible Reorganization of the Structure and Presentation of the Procedural Manual)

□ 주요 논의내용

CODEX 사무국은 19차 회의시 시간부족으로 규정집 재편성 논의를 하지 못했음을 회고하며 22차 CCGP 정규회의('04. 11)에서 정규의제로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마. 규정 IV.1 - 북미지역상황 고려

(Particular situation of the North America Region in the context of Rule IV.1)

□ 주요 논의내용

집행이사회의 지역회원중 북미지역에 대한 논의로서 제53차 집행이사회(2004. 2.)에서 규정IV.1 조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이 “delegate” 여부에 대해 WHO 법률자문가에게 확인해 본 결과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

미국대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총회에서 채택요청을 하며 의장 및 부의장은 직무수행동안 대표단을 대표해서는 아니되며 집행이사회, CODEX 관련기구 및 타국제기구에 관계할 때 CODEX 입장에서 답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For the purposes of Rule IV.1, it is understood that the Chairperson and Vice-Chairperson are not delegates of a country but represent all Member States”

FAO 및 WHO 법률자문관이 이에 대한 의견

및 “delegate”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설명해주길 제안, WHO 법률자문관은 집행이사회를 회상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CODEX 회의에 참여 가능하며 임원자격이 아닐 경우 대표단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 논의결과

FAO 및 WHO 법률자문관이 동내용을 명확히 하여 21차 CCGP 회의(‘04. 11)에서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바. CODEX 회원국 및 참관인에게 CODEX 문서 전자배포

(Implications of the exclusive use of electronic distribution of CODEX Documents to Members and Observers)

□ 주요 논의내용

19차 회의시 시간부족으로 논의를 못한 사항으로 사무국은 예산상 어려움으로 CODEX 문서의 신속한 배포 및 인쇄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문서의 필요수량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공람문서를 작성중임을 알렸다.

아르헨티나 및 스페인, 멕시코등은 전자문서 유통은 개도국에게 재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 규정XII.3안 및 CODEX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집행이사회에 개도국 참여를 위한 적용기준

(Criteria applicable for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 the Executive Committee in the light of the proposed Rule ?3 and the CODEX Budget available)

□ 주요 논의내용

지난 19차 CCGP 회의시(‘03. 11월) 검토한 규정 XII안(예산 및 비용)을 27차 총회(‘04. 6월) 상정할 예정에 있다. CODEX 사무국은 53차 집행이사회(‘04. 2월)에서 신탁기금 수령대상 개발도상국 목록을 합의하였고 규정 XII.3 적용시 동 목록을 임시로 활용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렸다.

또한 동규정안이 채택되면 FAO 및 WHO의 제1차 2년간 예산작성시 동규정안이 반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아. CODEX 참여증진을 위한 FAO/WHO 신탁기금

(FAO/WHO Trust Fund for Enhancing participation in CODEX)

□ 주요 논의내용

WHO 대표는 2003. 12월에 신탁기금 목표액인 US\$500,000에 도달하였으며 캐나다, EC,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등에서 기부하여 현재 US\$922,379에 도달하였음을 알렸다.

현재 수혜대상국으로 신청한 국가는 91개 국가에 이르며 CCFH, CCGP 회의에 개도국의 참석위해 이미 지원한 바 있다.

신탁기금 운영관련 제4차 보고서가 27차 총회(2004. 6.)에 제출예정이며 기부국(donor country) 회의는 2005년도에 개최예정임을 알렸다.

10. 차기 회의 날짜 및 장소[의제 10] (Date and Place of Next Session)

21차 임시회의는 2004. 11월 프랑스에서 개최예정이며 22차 정규회의는 2005. 4. 11~15 개최될 예정에 있다.

IV. 결 론

금번 회의에서는 수년동안 논란이 되었던 추적성(Traceability/Product Tracing)에 대해 정의를 규정함으로서 일반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정부 적용을 위한 “식품안전성 위해분석작업원칙초안” 및 “국제간 식품의 교역시 적용할 윤리규범 초안”등은 회원국간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룰 수 없었으며 향후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CODEX 내부규정이지만 내부규정을 통해 결정된 최종 CODEX 기준규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CODEX 참여방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차 일반원칙 회의작업 결과는 다음 표 참조

별첨 1

작업상황요약표

(제20차 일반원칙분과위원회)

의제내용	단계	집행기구	참고 (ALINORM04/27/33A)
규정집 개정안		정부 27차 총회	para. 12-14, 20, 30 부속서 II
규정 IIII 참관인 개정안		정부 27차 총회	para. 36 부속서 III
추적성 정의안		정부 27차 총회	para. 96 부속서 IV
국제간 식품의 교역시 적용할 윤리규범 개정초안	3	정부 27차 총회	Ppara. 77-78 부속서 V
식품안전성 위해분석작업원칙 초안	3	27차 총회 정부 22차 CCG	Ppara. 4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 사무국		정부 22차 CCG	para. 84
“식품” 정의 개정 27차 총회		27차 총회 정부 22차 CCG	para. 109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의 참여 원칙 개정 사무국		사무국 21차 CCGP	para. 120
<u>기타사항</u>			
- 집행이사회 임원 연임		사무국 21차 CCGP	para. 127
- 수락 및 통보절차			para. 132
- “delegate” 용어 해석			para. 138